

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(해양수산서기보) 경력경쟁채용 공고

2018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(해양수산서기보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8년 8월 8일

관 세 청 장

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연번	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임용예정기관	주요업무
1	해양수산 (선박항해)	해양수산서기보 (선박항해직류)	5명	부산	감시정 운용, 항만 감시업무 등
			3명	대구	
			2명	광주	
2	해양수산 (선박기관)	해양수산서기보 (선박기관직류)	4명	부산	"
			3명	대구	
			2명	광주	

* 임용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(중복지원 불가)

2 법적 근거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제2항 제2호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 제1항 제2호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제29조

3 채용자격 요건 (인정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)

- 공통요건
 -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응시결격사유

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■ 「공무원임용시행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*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

○ 응시자격

채용분야	임용자격
해양수산 (항해·기관)	【 선박항해직류 】 항해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 【 선박기관직류 】 기관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

*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자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

4 신분 및 보수수준

○ 『국가공무원법』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

○ 보수는 『공무원보수규정』, 『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등 관련규정 적용

5 시험 방법

가. 1·2차 시험(병행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
- 시험과목
 - 공통과목(2) : 물리, 관세법개론(제2장 제4절, 제3장, 제4장, 제5장 제외)
 - 전공과목(1) : 항해(선박항해직류에 한함), 선박기관(선박기관직류에 한함)
- 직류별 필기시험과목·점수 : 각 직류별 총 75문항, 300점 만점

구 분		시험과목	문항수	배 점	점 수	비 고
공통과목 (1차 시험)		물 리	25	4	100	객관식 선택형 (4지)
		관세법개론	25	4	100	
전공과목 (2차 시험)	항해직류	항 해	25	4	100	
	기관직류	선박기관	25	4	100	

- 출제범위 및 난이도
 - 관세법 : 현행 관세법 전문(제2장 제4절, 제3장, 제4장, 제5장 제외)
 - 전공과목 :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·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
 - 난이도 :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
- 합격자 결정
 -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험성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결정
 - ※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으로 함
 - 동점자 처리 : 필기시험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발생한 선발예정 인원의 1.5 배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

나. 3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
-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다. 4차 시험 : 면접시험

- 3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

- 면접위원이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'상', '중', '하' 평정

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	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)

※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시험 실시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)

【불합격 기준】
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'하'평정
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평정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
- 전형(서류전형 및 면접전형)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6 시험 일정

구분	원서접수 및 취소기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1·2차 시험 (필기시험)	'18.8.9(목)~8.22(수) (취소마감 8.23(목) 18:00)	'18.8.24(금)	'18.9.15(토)	'18.10.12(금)
3차 시험 (서류전형)				'18.10.26(금)
4차 시험 (면접시험)		'18.10.12(금)	'18.11.8(목)	'18.11.16(금)

* 공고방법 : 관세청,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재

7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

- 2018. 8. 9(목) ~ 8. 22(수) 18:00
-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(다만, 마감일은 18:00까지)

나. 응시원서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만 가능

-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(<https://cti.customs.go.kr>) → 시험정보 → 응시원서 접수 → “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” 선택
- 응시원서용 사진 : 해상도 100 이상, 규격 3.5cm×4.5cm, 파일형식 JPG,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(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가능)

다. 응시수수료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(응시수수료)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
- 응시수수료(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(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됨
-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(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)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

8 가산특전

가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○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본인및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나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
 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는 가산비율(10%/5%/3%)과 보훈번호(또는 증서번호) 입력
 -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
-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,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

9 유의사항

-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

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,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
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시키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,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,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gok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(☎ 042-481-7675), 관세국경관리연수원(☎ 041-410-85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관세청(부산·대구·광주)	-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시정 운용 및 육·해상 감시 업무 -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관리·운용 -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- 총기류·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- 선용품 적재·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등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 (공복의식) ○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 제반 지식 ○ 선박운용 관련 지식 ○ 선박(항해, 기관)에 대한 전문지식 ○ 수출입물품에 관한 지식 ○ 밀수동향 분석 등
-------------	---

응시 자격 요건	관련분야 : 선박항해, 선박기관	
	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해직류 : 항해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 ○ 기관직류 : 기관사(1~6급) 자격증 소지자